

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규칙

제정 2019. 11. 22 규칙 제155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건축 조례」 제38조에 따라 안양시 건축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양지역 건축사회(안양·군포·의왕·과천시역을 포함하며 이하 “건축사회”라 한다)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2년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(이하 “건축문화제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3조(추진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추진위원회의 기능)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건축문화제 운영 조직 편성 및 행사 기획
2. 건축문화제의 운영 및 예산의 집행
3.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추진위원회의 구성)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지역 대학교의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교수
2.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
3.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
4. 안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
5. 건축 및 디자인 관계 공무원
6. 그 밖에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

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
제6조(추진위원회의 회의)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추진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건축문화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2. 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
3.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건축문화상)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안양시 건축문화상(이하 “건축문화상”이라 한다)을 시상한다.

제9조(공모 공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안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.

1. 응모대상
2. 응모방법
3. 응모기간
4. 응모요령
5. 제출서류
6. 심사 및 시상 일정
7. 그 밖에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

제10조(공모부문 및 응모자격) ① 공모부문은 일반부 아름다운 건축물부문(이하 “건축물부문”이라 한다)과 학생부 계획부문(이하 “계획부문”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
② 건축물부문은 안양시 소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

③ 계획부문은 전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이 출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.

④ 동일한 작품으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.

제11조(응모서류 등) ① 건축물부문의 응모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안양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응모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2. 작품 설명서(별지 제3호서식)
3. 건축물 전경사진(규격: 가로 12.7cm, 세로 17.7cm) 10매 내외
4. 패널: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, 가로 90cm, 세로 90cm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, 실내외부분 경관사진, 건축개요·설계개요, 배치도·각 층 평면도·입면도(2면 이상)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일 내에 건축문화상 작품 출품서(별지 제4호서식)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패널의 매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
② 계획부문의 응모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안양시 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응모 신청서(별지 제2호서식)
2. 작품 설명서(별지 제3호서식)
3. 패널: 규격 및 내용은 제1항제4호와 같음
4. 모형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패널 및 모형에는 응모인을 표기할 수 없다.

④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2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3조(심사위원회의 기능)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세부 심사기준
2.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
3.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건축, 도시경관, 조형예술분야 대학교수
2. 건축사, 민간단체 임원 등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건축 및 디자인 관계 공무원
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건축문화상 시상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15조(심사위원회의 회의)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-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심사기준) 건축문화상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.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
- 2.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
- 3.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, 색채의 조화
- 4. 조경 및 예술장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
- 5. 시공 수준
- 6. 계획의 창작성·현실성, 공간구성의 합리성
- 7.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7조(작품심사)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. 다만,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건축물부문의 심사는 응모 시 제출된 사진으로 1차 사전심사를 실시한 후 2차 본 심사를 실시한다.
- ③ 계획부문의 심사는 사전심사 없이 본 심사를 실시한다.
- ④ 심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(시상구분 및 내용) ① 건축물부문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, 시공자, 건축주에게 수여하며, 시상등급은 금상·은상·동상으로 구분한다.

- ② 계획부문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·우수상·장려상·기관장 특별상·추진위원장상으로 한다.
- ③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전시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장·상금·상패·기념 동판을 수여한다.

1. 설계자: 상장·상패
2. 시공자: 상패
3. 건축주: 기념 동판
4. 학생: 상장 및 상금

제19조(실비변상) 추진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「안양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」은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안양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부문 응모 신청서

- 접수번호: _____
- 위치(대상필지): _____
- 용도: _____ (건물명: _____)
- 설계사무소 명: _____
- 건축사: _____
- 연락처: 사무실 _____ , 핸드폰 _____

. . .

신청인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안 양 시 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안양시 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응모 신청서

- 접수번호: _____

- 응모부문(주제): _____ (_____)

- 학교 및 학과명: _____

- 출품인: _____

- 연락처: 집 _____ , 핸드폰 _____

※ 계획부문의 공동출품 시 3인 이내로 한정함.

신청인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안 양 시 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작품 설명서

○ 접수번호: _____

○ 작품명: _____

○ 작품설명

안 양 시 장 귀하

